

보도일시	동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가능 합니다.		배 포 일	2018. 4. 12.(목)
작성부서	경영전략부 미래전략팀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	
책 임 자	윤관식 부장(051-519-1535)	담 당 자	이동성 팀장(051-519-1540)	
사 진	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배포부서	홍보부(02-3774-3060)	

최근 "삼성증권의 배당 착오" 사건 관련 "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"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함

-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·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음
 -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
 - 또한, 명의개서대리인(발행회사)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·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음
- 다만,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
 - 실시간 상호·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 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고,
 - 매매·대체·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
 - 이에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
 - 미국,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(CSD)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

<붙임> 「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」 관련 Q&A

※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는 인터넷(www.ksd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
<붙임>

「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」 관련 Q&A

(한국예탁결제원, 2018. 4. 12.)

Q1. 전산 착오로 기재된 주식의 장기간 유통될 수 있는지 여부?

-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마감시 증권회사의 투자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대조·확인하고 있어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음

< 주식보유수량 검증체계 >

기관	법적 장부	주식관리체계	주식수량 검증체계			
예탁결제원	예탁자계좌부	예탁자계좌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탁결제원은 일별 증감 내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·마감 •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의 종목별 수량과 예탁자계좌부의 수량을 상호 검증 		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자기분</td> <td>투자자분</td> </tr> <tr> <td>300주</td> <td>600주</td> </tr> </table>		자기분	투자자분	300주
자기분	투자자분					
300주	600주					
예탁자 (증권회사)	투자자계좌부	투자자계좌부(A증권사)			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투자자1</td> <td>200주</td> </tr> <tr> <td>투자자2</td> <td>200주</td> </tr> </table>	투자자1	200주	투자자2	200주
		투자자1	200주			
		투자자2	200주			
+						
투자자계좌부(B증권사)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투자자3</td> <td>200주</td> </tr> </table>	투자자3	200주				
투자자3	200주					

※ 금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,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해당일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의 업무마감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 가능

Q2. 주식이 초과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?

- 명의개서대리인(발행회사)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마감시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예탁결제원 명의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수량을 상호 대조·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초과 발행될 수 없음